Q: 어떤 경우 동의서를 받으십니까?

- 1) 수술실에서 행해지는 모든 수술. 단, 수술실에서 행해지는 시술은 담당의의 판단 하에 동의서 작성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.
- 2) 마취 및 진정제를 사용하여 수면을 유도하는 검사나 치료
- 3) 혈액을 투여하는 경우
- 4) 조영제 사용하는 검사
- 5) 고위험 약품 사용 시 (헤파린)
- 6) 전향적 임상시험이 이루어지는 경우
- 7) 심폐소생술 거부 시

Q: 해당 고위험 시술을 시행할 때 동의서를 작성 하십니까?

A: 예, 작성합니다. 고위험 시술이 시행되기 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한 후 담당 의료진에 의해 동의서가 작성됩니다. (스캔 된 의무기록 자료 제시)

동의서 작성 시 동의서 내의 항목은 모두 설명하고 빠짐없이 기입해야
함. 법정대리인이 사인을 할 경우 해당 사유란에 반드시 체크해야 함.

Q: 해당 혈액제제, 고위험 약물 투여 시 동의서를 작성하십니까?

A: 혈액제제, 고위험 약물 투여 전에 담당 의료인에 의해 동의서가 작성 됩니다. 의무기록 스캔된 동의서 근거 제시 수혈동의서: 입원기간내 첫 수혈 시

- 동의서 작성 시 필수항목
 - 1) 환자 상태 또는 특이사항(환자 과거병력)
 - 2) 환자의 진단명 혹은 의심되는 진단명, 수술 및 검사명
 - 3) 예정된 의료행위 종류
 - 4) 예정된 의료행위의 목적 및 필요성, 방법, 회복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
 - 5) 예정된 의료행위 이외의 시행 가능한 대체 방법
 - 6) 예정된 의료행위가 시행되지 않았을 때의 결과
 - 7) 집도의(주치의)의 변경 가능성
 - 8) 동의서 작성일시
 - 9) 설명 의사의 서명

- 10) 인적사항 및 연락처
- 11) 환자의 서명 혹은 보호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
- 12) 환자가 서명을 할 수 없어 보호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는 경우 이 에 합당한 이유
- 13) 단, 비급여 사용동의서(PCA, 기증건, 자기부담 동의서 등)와 동종골 사용동의 서는 위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지 않고, 본원 양식에 준함
- 설명 및 동의서를 받는 시기
 - 1) 의료 행위 전에 동의서를 받는다. (단. 응급상황에서는 예외로 한다.)
 - 2) 전화동의는 응급상황이면서 보호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부재시 가능하며, 전화동의 후 반드시 전화동의 들은 의료진, 구두동의권자 이름, 환자와의 관계 기록하고 전화동의 후 3일 이내에 서면동의서 받는다.

● 동의권자 자격

- 1) 환자만 동의 가능, 직접 설명하는 것이 원칙
- 2) 보호자/법정 대리인이 가능한 경우
- 3) 환자가 의사결정 하기 힘든 신체적, 정신적 장애 있는 경우
- 4) 미성년자
- 5) 동의서 설명 시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는 경우
- 6) 환자 본인이 특정인에게 동의권 위임하는 경우
- 7) 환자 이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한 경우 신분 확인하고 반드시 사유를 동의서에 기록함

W-7.6 장기이식 관리 규정

Q: 환자의 가족의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 환자와 가족이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하면 어떻 게 하시겠습니까?

A: 잠재뇌사자 발생 시 윤리위원회간사(원무과장: 1010)에게 연락한다. <u>병원장</u>은 잠재뇌사자 발생 시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리거나 국립 장기이식관리센터(KONOS)에 신고하여 검사 및 상담

재)한국장기 기증원: 02-3447-5632

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24시 뇌사관리 : 02-2628-3641